

해녀의 수익 침해

김 영 돈

Kim Yung-don : Encroachments on Women Divers' Earnings

SUMMARY

As is widely known, in Cheju-Do there are about 30000 women divers. Most of them are engaged in agriculture but when the season opens, they dive to catch various marine products, so to speak, at the risk of their lives.

They have been performing really hard labor but their living standard has been very low because they had to give the best of their catch to local and national officials as an "allotment."

Toward the end of the 19th century, many Japanese fishing fleets equipped with diving apparatus frequented the inshore waters of Korea, especially those of Cheju-Do, and nearly exhausted the sea products in the Cheju-Do waters, especially abalone which was the main object of the women divers' efforts.

Partly because of this devastation by Japanese diver-fishing fleets, many of the Cheju-Do women divers began in the 1880's to go out to the coasts of Kyungsang Namdo and other provinces to gain a better income. Some of them even went out to Japan, Russia and China.

When the Cheju-Do women divers went out to work on these coasts, they were taken, as a group, by a Kaek-choo, a male guide who also introduced the divers to the government authorities and the people in control of the areas in which the women were to dive. This "Kaek-choo" really sweated and exploited the women divers.

Even after the Liberation of Korea in 1945, the rights and interests of the women divers had not been secured. A government ordinance gave 1070 of the Cheju-Do women divers the legal right to dive on the coasts of Kuryongpo, Kampo and Yangpo in Kyungsang Pukto. But the local "fishermen's associations" in control of those areas usually rented out the fishing grounds to an entrepreneur so that the women divers had to dive as a mere working hand of the leaseholder, the entrepreneur.

As a result, the women divers had to pay a great part of their earnings, sometimes up to 80% of the total income, to the leaseholder in the name of various fees and charges.

The Cheju-Do women divers were squeezed and sweated not only in Kyungsang Pukto but also in other provinces. After many months' hard work, some of the women divers found themselves without even money to buy a third-class ticket to come home to Cheju-Do.

Even here and now in Cheju-Do, fishing fleets equipped with diving apparatus often devastate the women divers' fishing grounds and local "fishermen's associations" or local villages rent out the fishing grounds to a particular individual for an easy and large income, interrupting the women divers' work and their earnings.

1

제주도에는 3만이 넘는 해녀가 있다.¹⁾

세계적으로 유명한 제주도 해녀들은 해녀작업만 전념하고 있는 게 아니다. 제주도 해녀들은 오로지 해녀작업만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수가 많은데 이것은 큰 착각이다.

이들은 대부분이 농업을 겸업하고 있다. 만 부녀자들처럼 농업을 비롯한 다른 일에 종사하면서 해녀작업을 택하고 있는데 불과하다.²⁾

농업이 위주가 되었던, 해녀작업이 위주가 되었던 이들 거의가 밭을 가져 농사일을 치르면서 그 틈을 이용하여 해녀작업에 종사함으로써 수입을 올리고 가계를 돕는다.

또한 제주에서의 해녀의 위치는 제주도 수산업의 증추를 이루고 있다. 제주도 발행 「수산현황」에 따르면 1969년도의 어획량 28,610% 가운데 해조류가 75%(21,523%)이며, 패류가 6.8%

(1) 제주도 수산과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제주도지부의 통계는 수년전부터 제주도 해녀수가 2만 내지 2만4천 사이를 오르내리고 있다. 곧, 제주도 발행 〈수산현황〉에 의하면 1968년도에는 23,979명, 1969년도에는 21,122명, 1970년도에는 19,805명으로 나타나 있다.

그러나 해녀의 실제수는 이보다 훨씬 많은 수일 것이니, 이것은 막연한 추측이라기보다 본인이 1968년에 제주도 해안부락 몇을 골라 표본조사를 해본 결과, 도 수산과나 수협도지부의 통계보다는 약 2분의1쯤이 더 많다는 확증을 얻은 것이다.

(2) 1969년말 수협도지부의 〈수산업 가구, 가구원 종사자수 조사표〉에 의하면, 19,805명의 해녀 가운데 전업 632명, 피용 62명을 뺀 19,111명은 겸업으로 나타나 있으니 그 겸업률은 무려 96.5%에 달하고 있다.

해녀의 수익 침해

(1.948%)로서 어류(18% 5,074톤) 기타(0.2% 65%)를 빼고난 총어획고의 81.8%가 바로 해녀들의 손에 의하여 확보되고 있다. 또한 제주도 해녀수는 제주도 수산업 종사자수의 약 3%에 달하고 있다.”

더구나 제주도 해녀들에게는 특수한 혈통이 있는 것도 아니다. <해녀>라면 혈통에 따라 세습하거나 하는 유다른 족속처럼 생각하고 이상인처럼 보는 수가 많은데 이것은 큰 착각이다. 제주도 해녀들이 특별히 잠수작업에 적합한 유전적 소질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은 미국의 유명한 과학잡지 Scientific American 1967년 5월호에 발표된 바 뉴욕주립대학교 교수 Hermann Rahn박사와 연세대학교 교수 홍석기박사의 공동연구 집필인 「The Diving Women of Korea and Japan」에서도 지적하고 있다.⁴⁾

그러므로 제주도 해녀는 제주도의 소중한 산업전사일 따름이니, 한갓 관광의 대상이거나 신비의 휘장으로 가리워진 별세계의 존재들이 아니다. 알몸둥이에 해녀복을 입은 채, <비창>·<장계호미>와 <테왁>·<망시리>따위를 들고 바다와 싸우는 가장 용감한 생활인들이다.

- 유리잔을 눈에다 부치꼭
- 테왁을 가심에 안꼭
- 무췌 비창 손에 찌꼭
- 지픈 불숙 들어 보난
- 수심 줌복 하서 다마는
- 내 술 짚관 못하어라

(拙著「濟州島民謠研究」(上) 謠834)

(3) 1969년도 제주도 발행 <수산현황>에 따르면 수산업 종사자 총수 34,640명 가운데 해녀수가 21,122명이니 해녀수는 수산업 종사자 총수의 약 3분의2에 달하고 있다. 그런데 1970년도 제주도 발행 <수산현황>에 의한다면 수산업 종사자 총수 35,392명에 해녀수는 19,805명으로 나타나 있으니 해녀수는 수산업 종사자 총수의 3분의2에 훨씬 미달된 7분의4쯤으로 드러나고 있다. 수협도지부에 의하면 해마다 해녀수가 3.3%씩 줄어들고 있다지만 증감여부 및 그 프로테이즈의 정확성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수협도지부나 제주도 수산과 당국은 통계적 산출 근거를 어디까지나 어촌계원수에 근거하고 있는데 어촌계원으로 가입하는 비율은 심히 부동적인 것이어서 실제 해녀수를 파악하는 데는 정확한 자료일 수가 없는 것이다.

(4) Dr. Hermann Rahn과 홍석기박사는 「The Diving Women of Korea and Japan」에서 해녀의 유전여부에 대하여 「수중환경의 적응현상이 단순히 훈련에서 얻어진 것인지 혹은 유전적인 소질에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훈련과 유전의 양자가 결합하여 형성된 것인지는 아직도 의문이다」라고 해 놓고는 나중에 가서 「우리들이 연구한 한도내에서 보면 잠수부들이 특별히 잠수작업에 적합한 유전적 소질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다시 말하면 한국 농부의 딸들도 잠수부의 딸들처럼 장기간의 훈련으로 숙련된 잠수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훈련과 경험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유전적 소질을 부인하고 있다.

(역) 유리안경 눈에다 붙이고
 *〈테왁〉을 가슴에 안고
 무쇠**〈비창〉 손에 끼고
 깊은 물속 들어 보니
 수십 전복 많더라마는
 내 숨 짧아 못하더라

* 밖의 씨통을 파내어 말리고 구멍을 막아서 해녀들이 바다에서 작업할 때 타서 해염
 치는 물건.

** 전복을 막는 길쭉한 쇠붙이.

셀물때를 골라 〈테왁〉과 〈망시리〉(〈테왁〉밑에 달린 해녀기구로서 노끈으로 들성들성 전대
 비슷하게 엮어 채취한 해산물을 넣는 것)따위를 〈구덕〉(바구니)에 집어넣은 해녀는 이웃들과 더
 붙어 바다에 이른다. 탈의장이거나 바닷가 바위밑에 옷을 벗어 쌓아 두고는 해녀복(물옷)만 입
 은 채, 물안경을 쓰고 머리엔 물수건을 두르고는 바위에서 해염치 나간다.

5~6m 깊이의 바다에서 잠수작업을 시작한다. 넓미역쯤을 채취할 때는 소섬(牛島, 구좌면 연
 평리)에서의 경우, 최고 12질(약 19m)까지 들어갈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기량이 우수한 〈상좁
 수〉(상군해녀)⁵⁾ 몇몇의 경우요, 일반적으로 것처럼 수십 깊이 잠수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깊은 물속은 들어가 보니 전복들도 많더라마는 숨이 짧아 못하더라는 노래가 쏠아진다. 드문
 일이긴 하나 억지로 전복따위를 캐며 장시간 무리하다가 질식해 목숨을 잃는 수도 있다.

○ 혼백 상지 등에다 지꼭
 가슴 앞의 두렁박 차꼭
 혼손에 비창을 꿰꼭
 혼손에 호미를 꿰꼭
 혼질 두질 수지끈 물속
 허위적허위적 들어간다.

(前掲書 835)

(역) 혼백상자 등에다 지고
 가슴 앞에 *〈두렁박〉 차고
 한손에 〈비창〉을 쥐고
 한손에 낫을 쥐고
 한길 두길 깊은 물속
 허위적허위적 들어간다.
 * 〈테왁〉을 뜻함

(5) 제주도 해녀는 작업 기량의 우열에 따라 〈상좁수〉(上軍)·〈중좁수〉(中軍)·〈하좁수〉(下軍)로
 나누인다.

이들은 사실 혼백상자를 등에다 지고 생명을 걸어 작업한다.

석북집(石北集)의 제주잠녀가(濟州潛女歌) 가운데서도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⁶⁾

「……………人生爲業何須此오 爾獨貪利絕輕死를 豈不聞陸可農蠶山可採아 世間極險無如水를 能者深入近百尺야 往往又遭飢蚊食을……………」

2

제주도의 역사는 설움의 역사다.

땅이 몹시 메마른데다 풍해(風害)·한재(旱災)가 겹쳐서 굶주림과 질병이 늘 짓궂게 되풀이 되기만 했다.

중앙정부의 등쌀에 쓸골 시달려 왔는가 하면 지방 토호(土豪)의 행패가 말이 아니었고 관리들의 수탈 역시 끊일 새 없었다.

축성(築城)·진설(鎭設)을 비롯하여 진상공물(進上貢物)을 서울로 운송하는 일, 도로·교량을 신설하고 보수하는 일과 목장을 관리하고 조선(造船)하고 봉수대(烽燧台)를 설치하는 일등 남자들의 부역도 힘겨운 바 많아서 성종조(成宗朝)에서 인조초(仁朝初)까지 140여년간 본토로 유망하기까지 했었다.

본토로 유망(流亡)한 이유로서는 또한 말·말을 비롯한 지긋지긋한 공부(貢賦)가 큰 문제였다. 사품(四品)이상의 관리들은 제주도에서 실어다 바치는 말을 분배 받아 배 채우는 정도였으니(濟州獻馬分賜四品以上⁷⁾) 더할 말이 이미 없는 것이다.

태종 때의 공부제(貢賦制)를 보면 大戶는 大馬 1필, 中戶는 中馬 1필, 그리고 小戶는 5호 합쳐 中馬 1필씩을 바쳤다 하며(丁巳初定濟州貢賦議政府啓濟州隔海民戶貢賦至今未定乞大中小戶分揀以其土產馬匹大戶大馬一匹中戶中馬一匹小戶五並中馬一匹⁸⁾) 심지어는 공민왕(恭愍王) 23년에 명나라에서마저 제주말 2천필을 바치도록 고려조에 강요했던 일마저 있었는데 실제는 3백필만 보냈었다지만⁹⁾ 외국에서까지 이렇게 할퀴어들고 보니 도민의 형세는 말할 수 없는 비통의 구렁에서 헤어날 수가 없었던 것이다.

마공(馬貢)을 위시하여 골류·약재등 제주도의 특산물은 거의 서울을 향해 올라갔다.

이조시대의 제주목(濟州牧) 토공품목(土貢品目)을 다음에서 천천히 보더라도 이는 곧 짐작할

(6) 李能和著 朝鮮女俗考(1968, 서울) P.262.

(7) 高麗史節要 卷18 元宗 元年 7月條.

(8) 太宗實錄 卷16 8年 9月條.

(9) 高麗史節要 卷29 恭愍王 33年 7月條.

수 있다.¹⁰⁾

玳瑁·牛毛·膏藁·榧子·柑子·柚子·乳柑·洞庭橘·金橘·青橘·山橘·全鮑·引鮑·槌鮑·條鮑·烏賊魚·玉頭魚·昆布·山柚子木·二年木·榧子木·良馬·藥材·陳皮·山藥·石薺·草薺·川練子·白芷八角·零陵香·五倍子·梔子香·附子·木瓜·柴胡·青皮·白扁豆·草烏頭·海東皮·厚朴·烏魚骨·杜冲·蔓荊子·石決明·半夏·黃菊·鹿茸·舶上·茴香·枳殼·

해녀들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다.

위의 세종실록 지리지에 나타나는 제주목(濟州牧)토공품목(土貢品目)가운데만 보더라도 全鮑·引鮑·槌鮑·條鮑·昆布등이 끼어 있는데 이들은 전혀 해녀들에 의해서만이 캐어낼 수 있는 것이다.

고려로 치올라가 보더라도 제주도의 수산물은 이미 유명하였으니 탐라국 왕자 수운나(殊雲那)가 그 아들 陪戎·校尉·古物등을 파견하여 牛黃·牛角·牛皮·螺肉·榧子·海藻·龜甲等의 물자를 바쳤으며, 왕은 그 왕자에게 중호장군(中虎將軍)의 벼슬을 주고 公服·銀帶·彩段·藥物을 하사하였다는 기록이 보인다.

文宗七年二月丁丑耽羅國王子殊雲那遣其子倍戎校尉古物等來獻牛黃牛角牛皮螺肉榧子海藻龜甲等物王授王子中虎將軍賜公服銀帶彩段藥物¹¹⁾

여기 보면 수산물인 螺肉·海藻·龜甲等이 끼어 있는데, 螺肉·海藻는 바로 해녀들에 의한 채취물인 것이다.

또한 고구려, 후위(後魏)에 까지도 제주도의 진주는 그 값어치가 높았었다는¹²⁾ 것이며 원나라에서도 사람을 보내어 이를 구했던 일이 있었음은 다음 기록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林惟幹採珠耽羅不得乃取民所藏百餘枚還千元¹³⁾

또한 문종 33년에는 탐라국 句當使 尹應均이 大眞珠 2매를 바쳤는데 빛이 별처럼 빛나므로 당시의 사람들이 <夜明珠>라 했다는 기록도 보인다.

文宗三十三年十一月壬申耽羅句當使尹應均獻大眞珠二枚光耀如星時人謂夜明珠¹⁴⁾

진주는 예나 지금이나 구하기 힘든 것으로 어쩌다가 해녀들이 채취하는 전복에서 나오는 것인데, 요행히 이를 구하게 될 때, 두어 두었다가 입에 물고 증명하면 극락에 간다고 전승되고 있다.

(10) 世宗實錄 地理志 濟州牧 土貢品目.

(11) 高麗史 世家 卷第7. (11 文宗 7)

(12) 三國史記 卷19 高句麗本紀 第7 文咨王 13年條.

(13) 高麗史節要 卷19 忠烈王 二年 6月條.

(14) 高麗史 世家 卷第8 文完2.

너무나 귀중한 것이기 때문, 어쩌다가 이를 잃게 되면 재수가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 금조동아	옥조동아
천지 건곤	일월동아
초록맹지	비단동아
남전북답	장단호덜
이보단 더	더 지쁘멍
산호 준지	봉가신덜
이보단 더	더 홀소나

(拙著 前掲書 誌1374)

(역) 金子童아	玉子童아
天地乾坤	日月童아
초록朋紬	비단동아
南田北畝	장한만들
이보다 더	더 기쁘며
珊瑚 眞珠	주웠던들
이보다 더	더할소나

자장가에서 보던 진주를 얻는다는 것은 전답을 마련하고 산호를 줌의 것과 더불어 진중한 일이나 이는 마치 자식을 얻듯이 기쁜 일이라고 노래되고 있다.

진주에 대한 것은 한 예에 불과한데 어쨌든 제주도에서는 옛부터 해조류와 패류의 채취·포획이 성행했고 중요한 생업이었음을 살펴 볼 수 있으며, 역사가 있어서 이래 제주도 해녀들은 단 도넛들과 마찬가지로 공물을 마련하여 이를 진상하는데 줄곧 시달려 왔음을 이내 짐작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진(李健)도 그의 《濟州風土記》 속에서 해녀들의 어로 형태를 말하다가 다음과 같이 그 가혹한 수탈을 지적한 바 있다.

「……採取하여 官家所徵의 役に 應하고 그 나머지로써 典賣하여 衣食한다. 그 생리의 難苦야 이루 말할 수 없으며 만약 不廉의 官吏 있어 貪汚의 마음을 멋대로 내킨다면 곧 名目을 巧妙히 하여 徵索하는 일 헤아릴 수 없다. 一年의 所業으로써도 其役に 응하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하물며 官門에 수납하는 일의 어려움과 吏胥의 弄奸과 弊는 망극하니 또한 무엇으로써 밀친 되길 바라리오」

1년내내 생명을 걸어놓고 해녀작업을 하고도 관가에 바칠 해산물을 마련하기가 모자란 형편

이러니 수월당한 정도가 얼마나 심했는가를 이내 짐작할 수 있다.

15세기 중엽, 제주에 부임해 온 기진(奇震)안무사가 있었다. 청렴결백한 분이었는데 세종 25년(1443)의 어느날, 그는 민정시찰차 바닷가를 거닐다 보니 연약한 여인들이 반나체로 바닷물속에 뛰어들어 작업하는 것을 보고 몹시 감탄하며 안타까워 했다. 엄동설한에도 몹쓸 고통을 참아가면서 채취한 해산물이 바로 자기의 식탁위에 날마다 오르는 푸식임을 알게 되자 “주만들, 특히 연약한 여인들이 저렇게 괴롭게 채취하는 해산물을 내 차마 어찌 먹을 수 있으리오”하면서 奇震안무사는 재임중 해녀가 채취한 해산물을 일체 먹지 않았다는 일화마저 전한다.

한겨울의 추위도 무릅쓰고 벌거벗은 채 잠수하여 간신히 채취한 얼마 안되는 전복·미역등에 대해서도 이조때는 監考의 抑徵과 別貢의 勤買가 행해지고 있었음을 다음의 기록에서 찾아볼 수 있다.

至於海尺浦作之戶尤爲可憐隆冬探腹盛寒刈藿男婦赤裸泗入海底戰兢波吒不死誠幸熬火岸上出而夙身膚裂皮皴醜黑如鬼僅摘數枚之鰓艱得數掬之藿其得價本無以資其飮活而監考之抑徵別貢勤買箠罵狼藉¹⁵⁾

이것은 좌의정 李相穉의 계언(啓言)인데 영세한 해녀나 어민들에게까지 가렴(苛歛)의 손길이 얼마나 철저히 뻗치고 있었는가를 잘 말해 주고 있다.

더구나 이조말에 와서는, 해조류가 자라나는 광전(鑿田)·태전(苔田)등이 온통 토호(土豪)들에게 사점(私占)되어 있었다. 토호는 광전·태전을 사점하여 어마어마한 세금을 사수(私收)하는가 하면 광암(鑿岩)은 상당히 고가로 매매되기도 했다. 이것은 곧 균역법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던 것으로 호남·영남지방의 경우가 기록에 명시되어 있지만 제주도라고 예외일 수 없으며 호남·영남지방이라 하더라도 이를 채취하는 자는 역시 제주도 해녀들이 대부분일 터였기 결국 그 피해는 제주도 해녀들에게 쏠리기 마련이었을 것이다.

어쨌든 각종각양의 봉건적 수탈의 가혹성으로 말미암아 옛부터 우리나라의 수산업은 소걸음처럼 그 발전이 느리었다. 치올라가 고려 때만 보더라도 現物地代의 형태인 租稅 및 貢稅, 勞動地代의 형태인 부역노동이 봉건적 수취양식의 기본형태이었던 것이다. 경제적 생활자료가 생산된다는 銀行·織所·絲所·紬所·紙所·瓦所·炭所·塩所와 마찬가지로 鑿所가 보이며 해조류가 생산되는 광소에서는 으레 해조류를 공납했었던 것이다. 상공(常貢) 이외에 별공(別貢)이 따르는 이 엄청난 공세의 징수로 해서 제주도 해녀들의 괴로움이 말할 수 없이 컸었으리라는 것은 이내 짐작할 수 있다.

(15) 純祖實錄 卷之27 正祖 25年 11月 壬寅.

3

19세기말에 이르러서는 일본의 잠수기선이 마구 한반도에 몰려들어와 어로작업을 함으로써 제주도 해녀들이 채취할 전복등 패류를 함부로 뺏어갔다.

1876년 병자수호조약(강화도조약)의 강제 체결에 성공한 일본은 이를 계기로 하여 일본 어민들의 한반도 출어가 갑자기 늘어났다.

1883년 6월 22일 서울에서 조인된 「在朝鮮國日本人民通商章程」에 제41관을 삽입함으로써 한반도 연안에 있어서의 일본인의 어업을 합법화하기에 이르렀다.¹⁶⁾ 곧, 일본의 어선은 조선국의 전라·경상·강원·함경의 4도 연안에서 어업을 할 수 있고 조선국 어선도 일본의 肥前·筑前·石見·長門·出雲·對馬島の 앞바다, 곧九州 북부의 長崎縣·佐賀縣의 연안, 중국의 山口縣·島根縣 및 對馬島 연안에서 어업을 할 수 있음을 약정한 것이다. 이 약정은 표면상 평등을 가장해 있다. 그러나 일본어민조차 버리는 황폐일로에 놓인 일본의 어장에 한국의 어민이 출어할 필요도 없거니와 연안교착적(沿岸膠着的) 어업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당시의 한국 어민들로서는 설령 일본까지 출어하려 해야 나갈 수도 없었으니 말하자면 일본 어민의 한반도 통어에 대한 일방적 합리화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1885년 長崎縣廳 왕복문서에 의하면 縣下 各部長으로부터 들어온 보고에 조선인의 전복 채취 농물은 일본인의 약 10분의1밖에 안된다는 점이 지적된 바 있는데 이것은 제주도 연안에서 전복 채취에 종사한 잠수기어선임이 틀림없을 것이다.

이의 방증을 <韓國水産誌>에서 찾아보면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鮑(生腹)漁業は海鼠漁業と其沿革を同ふし。古來本邦人の之れを捕獲するの業微々として振はさりき。されは日本漁業者のこれに手を染むるに至るや。到處鮑の群棲を見ざるはなく其形体頗る大に一顆の量八百双以上に及ふものありて當時潛水器一台にて一日二百貫双の鮑を捕獲するは易々たりしと云ふ。而して其創始は今を去る25.6年前長崎縣人の濟州島に渡航して捕獲に従事したるにあり。是れ實に本邦沿海に於ける日本人潛水器漁業の嚆矢なりとす。爾後本邦に於ける鮑の漁利巨多なること一般の知る所となり。漸次日本漁船の數を増加し殊に此時恰も日本長崎其他の地方に於て潛水器漁業の制限令發布せられしかは潛水器漁船の本邦に渡航するもの一時に激増し海鼠と共に濫採酷捕し其結果或は轉して海鼠胎の採收を主とするあり。或は全然他の漁業に轉するありて漸く其數を減少し今や當初の盛況を見る能はざるに至れり。然れとも尙海鼠、胎貝、帆立貝等と併せ捕獲すると共に近來製品を改良して良品を出すにより相應の漁利あり。而も採檢を遂くれは江原咸鏡兩道沿海其他に於て新漁場を發見し得られざるにあらざるへし。 …中略…

(16) 水産業協同組合中央會刊 韓國水産發達史(1966. 서울) PP. 266~267 참조.

日本人にありては主として潜水器を用ひ裸潜にて採收するもの亦た多く其數潜水器(海鼠其他貝類をも採取す)百三十七台, 裸潜漁船六十八艘四百八十五人にして其出漁元は潜水器船長崎縣・徳島・愛媛・大分・廣島・山口・兵庫・新潟等の諸縣とし裸潜は愛媛・長崎・三重・福岡・兵庫・熊本の各縣なりとす.¹⁷⁾

전복 채취는 이 기록으로 볼 때, 한국인들의 손에 의하여 별로 전진이 없자, 일본 잠수기 어선의 침범을 보게 되었는데 1880년대초 長崎縣人들이 제주도에서 들어와 포획에 종사한게, 일본인 잠수기 어업의 출발이라는 점과 당초에는 전복이 무척 크고 많아서 잠수기 한대로써 하루 2백판씩을 채취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인의 잠수기선이 무려 137대나 몰려들어 있었다니 그야말로 대단한 일이었다고 이의 남획이 한참 계속하게 되자, 점차 그 수가 썩 줄어들었으며 형태도 아주 작아졌음을 다음 기록에서 찾아 볼 수 있다.

鮑は沿海産せざる處なく殆ど無盡藏と稱せられしか夙に日本潜水器業者の渡來して濫獲したる結果今は大に減少せり。古來土著の潜水婦之れを採取し來りしか現今は終日操業して僅に一二個を獲るに過ぎず。潜水器漁業者稍々深き處にて操業するか故に多少の漁獲ありと雖も最早昔日の如き巨利を博することを得ず。殊に本島産は形狀巨大なるを以て著名なりしか今は概して小形となれり。¹⁸⁾

이처럼 일본의 잠수기업자들이 제주도 연안에 와서 능률적인 방법으로 전복등을 캐어가게 되자 생업을 잃다시피 되던 제주도 어민들은 일본 어민들의 내어를 막기 위하여 피눈물나는 노력을 다하였다. 제주도 연안에 내어한 일본 어민들의 대부분은 長崎縣의 잠수기어업자였는데 이들의 어로방법은 너무나 능란한 것이므로 제주도 해녀들에게는 커다란 손실일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제주도민들은 <일본 어민들의 제주도 연해 내어 반대 투쟁>을 필사적으로 벌이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끈질긴 투쟁이 얼마나 줄기찻던지 잠깐 주효하여 1884년 9월 일본 외무대신 井上馨이 長崎縣令 石田英吉 앞으로 보낸 훈달(訓達) 가운데는 제주도의 통어는 당분간 중지하라는 조항이 끼어 있을 정도였다.

제주도는 도민의 대부분이 어업에 의하여 생활하고 있고 특히 채복채곽(採蝸採蠶)은 모두 부녀자, 곧 해녀들의 전업이 되어 있는데 만일 외국인이 들어와 어업하게 되면 제주도 여인들은 생업을 잃을 우려가 있으니 도민의 고통을 참작하여 제주도에 대한 통어는 당분간 중지해 달라는 조선 정부의 요청에 따라 이런 훈달이 있었으나 일본의 잠수기업자들은 이런 훈달과는 아랑곳도 없이 계속 출어하고 있었다. 악랄한 일본 어민들은 밀어(密漁)를 계속할 뿐더러 심지어는 살인·약탈행위까지 일삼고 있었다.¹⁹⁾

(17) 韓國水産誌 (1908, 隆熙 2년 12월 25일 발행, 農商工部水産局編纂) 第1輯 PP. 297~298.

(18) 同上 第3輯 第4章 P. 406

(19)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간행 韓國水産發達史 (1966, 서울) P. 269

그 예로는 고종 28년(1891년) 5월 15일, 일본어선 수10척이 健入浦 앞바다에 내어하여 총검으로 16인을 살상하였고 이어 6월 13일 또다시 朝天里·北浦里등 연안자포에서 살인약탈사건이 발생했다는 기록이 있다. 그런가 하면 고종 29년(1892년)에는 일본의 長崎縣·對馬島 어민 144명이 城山浦에 상륙하여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부녀자를 쫓아가 하면 동민을 살해하였고, 그해 4월에는 禾北浦에 이르러 행패를 멋대로 부리다가 동민에게 상해를 입혔으며 같은 달 明月鎮·頭毛里浦에 쳐들어와 부녀를 강간하고 동민들의 재산을 강탈하였으니 이는 한갓 예에 불과할 뿐, 이들의 반어반적적(半漁半賊的) 성격으로 해서 제주도 해녀 및 도민 전체에 주는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었던 것이다.

당시 제주도 해녀들이 입은 피해는 1892년 일본인 關澤明清의 「제주도 현지 조사보고」에서도 충분히 드러나고 있다. 곧 제주도 연해에 모여든 일본의 잠수기선은 도합 7~80대나 된다는 것, 그들은 종전에는 매일 전복 생패(生貝) 400관 내지 500관은 쉽사리 포획할 수 있었지만 오늘날엔 그 남획(濫獲)으로 말미암아 힘껏 포획하여도 하루에 150관을 넘는 일이 드물기 때문, 이대로 두어 두면 3년 내지 5년 안에 자원이 멸종상태에 도달할 것이라는 내용과 아울러 이들은 부인들이 있는 곳에서도 거의 벌거벗은 채 돌아다니기 때문 제주도 해녀들은 바닷가에서 이들을 만나면 놀라 도피하였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어획물을 도난당하였는가 하면 미풍양속을 해치는 수가 많았던 것이다.

4

제주도 해녀들은 일제치하에서도 다른 모든 부면에서와 마찬가지로 수탈당하기만 했다. 그것은 여러가지 형태로 나타났는데 특히 19세기말에 이르러 본토 동해안을 비롯한 각 연안에서 출가하기 시작함으로써 출가해녀(出稼海女)에 대한 권익침해는 말할 수 없이 큰 것이 돼 버렸다.

제주도 해녀들은 1980년대초 우선 경상남도에 출가하기 시작하여 점차 다도해로부터 경상북도·강원도·함경도·황해도에까지 이르렀고 드디어 한국 각 연안에 안 이룬 곳이 없게 되었으며 멀리는 일본·러시아·중국 산둥성의 연안에까지 이르렀다.²⁰⁾

부산·동래·울산 일대에 나가게 된 제주도 해녀들은 대체로 일본의 해조업자의 모집에 응하고 있었다. 곧 매년 음력 1~2월경 부산 해조상인들로부터 자금의 공급을 받고 제주도에 들어와 출가 해녀들을 모집하는데 응모자에게는 채취물을 유상으로 사들인다는 약속밑에 들어 준비자금으로서 전도금을 지급하고 식량 또는 기타 필수품을 대부하면서 인솔해 갔었다.

모집 경과만 보더라도 남편 몰래 유부녀를 데려가거나 처녀들일 경우 거의 유괴에 가까운 수단을 취했던 것도 문제이거나 해녀들에게 지출한 전도금에 대해서는 고리(高利)를 가했고 공급물

(20) 朝鮮 1933年(昭和 8年)7月號 PP. 67~69 田口麟憲「濟州島の海女」 참조.

에 대해서는 이자를 붙였었다. 또한 채취물의 근량을 속이는가 하면 어기(煎期) 종료시에야 청산하기 때문 그 사이 쌓인 전도금, 식비등에 복리(複利)를 붙이는 일이 늘 거듭되었다.

갖은 위험과 고난을 무릅쓰며 번 해녀들의 수입은 객주(客主)들의 호주머니만 불리는 격이 되어 드디어는 부채를 짊어지고 귀향할 수도 없는 실정에 이르는 해녀들이 많이졌다.

제주도의 유지들은 이러한 실정을 가만히 내다볼 수만은 없었다. 제주도내의 영세해녀들 및 출가해녀들의 구제보호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1920년(大正 9년) <제주도 해녀어업조합>을 설립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이 해녀어업조합은 1936년 일반 어업조합과 병합할 때까지 해녀들의 권익옹호 및 풍기개선, 해조류의 번식·보호에 이바지한 바 공헌이 자못 컸거니와 그중에도 19세기말이래 줄곧 한반도 각 연안 특히 경상남북도에 출가하는 해녀들의 구제, 보호와 수익 향상에 끼친 공로는 대단한 것이었다.

그러나 수탈당하기만 하는 해녀들을 극력 옹호했어야 할 이 해녀어업조합의 조합장은 바로 도사(島司)가 겸임했었기 때문 도내에 있어서의 해녀의 권익등은 일체 묵살당하고만 있었다.

목숨을 걸어놓고 캐어 놓은 해녀들의 채취물을 응당 공동판매했어야 할 것임에도 특정의 일본 상인에게 독점판매케 함으로써 영세해녀들의 권익을 침해하는가 하면 조합과 결탁하고는 갖은 수탈행위를 자행하였었다.

출가금 교부비란 명목으로 막대한 돈을 출가해녀 개개인에게서 거둬들이는가 하면 채취물의 가격을 정당하게 지불하지 않았고 경쟁입찰을 피했는가 하면, 과중한 조합비를 징수함으로써 해녀들을 괴롭혔다.

해녀들의 골수에 사무친 원한은 드디어 1932년 1월 24일, 세화리 해녀사건으로 폭발했다. 세화를 지나가던 도사에 대한 항거의 분노는 1천여 해녀들로 하여금 도사의 차량을 대파시켰고 전라남도에서까지 급거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겨우 진압할 정도였다 한다.¹⁾

해녀들의 분노는 충천했으나, 무자비하게도 연행, 구금당했고 해녀들 및 유지들은 실형을 치르지 않을 수 없었다.

해녀들의 이런 장거(壯舉)는 별효과를 거둘 수 없었으나 다만 도사는 채취물의 공동판매 제도를 마련했고, 특정 일본 상인에게만 판매하는 일을 지양했는가 하면 미성년자 및 노인들의 출가를 완화하는 등 몇가지 선심을 쓰기도 했다.

일제말에 이르면서 그들의 탄압은 간여린 해녀들에게 갖가지로 가중되어 갔다. 제주도 해녀들이 당해야 했던 갖가지 인권 유린과 수탈 행위는 우리 한민족이 겪어야 했던 일제 치하의 공통된 비통의 일부였던 것이다.

(21) 廣大元著 海女研究(1970. 서울) PP. 210~212 참조.

5

해방이 되어 국권을 되찾은 이후엔 침해받기만 하면 해녀의 권익이 응당 최대한으로 보장받아야 할 것인데도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당위성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해방이 된 이듬해, 수산업법이 새로 제정하게 되자, 해녀의 권익을 항상 염려해 오던 관계유지들은 대동단결하고 수산업법 제40조 ①(②항²²⁾)의 제정을 얻는데 성공했던 일은 제주 해녀의 권익을 위해 다행한 일이었다.

말하자면 해녀의 입어관행(入漁慣行)이 합법적으로 인정되게 된 셈이다. 그리고 종전에는 제멋대로 받아왔던 입어료를 수신당국의 인가를 얻게 하는데 성공한 셈이다.

그리고 1950년 2월에는 부산에서 <韓國潛嫂漁業水産組合>의 결성을 보았는데 6·25로 말미암아 활동에 들어설 수는 없었으나 이런 기운이 이어져 내려와 1961년 <韓國潛嫂協會>가 출범했으니 이 모임은 부산 영도지방에 나가 있는 제주도 해녀들의 권익옹호와 수탈방지에 상당한 공헌을 세웠다.²³⁾

제주도 해녀의 수탈의 초점은 역시 <慶北 裁定地區 出稼海女 問題>로 쏠린다. <慶北 裁定地區>란 제주도 해녀들이 해마다 출가하는 경상북도 구룡포(九龍浦)·감포(甘浦)·양포(良浦) 3개 어업협동조합 관내 제1종 공동어장을 말한다.

제주도 해녀들은 어찌하여 이곳으로 쏠리게 되었으며 어떤 경로를 밟아 재정(裁定)받기에 이르렀는가?

노동이란 무릇 생활을 위한 것이요,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한 경제물질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렇다면 자그만 노력으로써 보다나은 수익을 얻으려는 욕구는 누구나마의 소원일 것이다.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섬이라지만 제주도의 경우는 값진 천초(天草)가 연간 20만근밖에 나지 않는데 비해 경북 같은데는 이의 4배인 80만근이나 생산되는데 그 지방에는 이를 채취할 해녀가 퍼 모자라다. 그 지방 해녀가 도합해야 1천명 정도이니 해조류 채취기에 이르게 되면 사실상 경북에서는 제주도 해녀를 필요로 하고 원하기 때문이다.

1967년 5월, 경북 재정지구에 필자가 출장했을 때, 당시 어업협동조합 실무자들의 말에 따르면 예들어 구룡포 어협관내만 하더라도 그 지방 출신 해녀가 800명에 달한다고 하지만 이는

(22) 수산업법 제40조(입어의 관행) ① 공동어업의 어업권자는 종래의 관행에 의하여 그 어업장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자의 입어를 거절할 수 없다. ② 공동어업권자는 입어자에 대하여 지방장관의 인가를 받아 입어료를 징수할 수 있다.

(23) 康大元著 海女研究(1970. 서울) PP.113~114 참조.

과장된 수요인 줄 안다. 왜냐하면 그때 경북 재정지구에 출가하는 제주도 해녀의 입어관행권 탈소확인 소송이 대구지방법원에 계류중에 있었기 때문, 이제는 제주의 해녀가 하등 불필요하게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려는데서 오는 구실이었지 않았나 느껴진다. 이것은 그곳으로 출가했던 제주도 해녀들이 1967~69년 사이에 증언하는 바에 따라서도 밝혀졌다.

그리고 제주도에는 이들의 노동력을 받아들일 만한 공장 시설 같은 것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 부득이 용돈이나 자산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본토 각처의 방직공장에 출가하듯이 본토 어장으로 나가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기도 하다.

고향에서 어로작업하느니보다는 훨씬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이유와 아울러 영세성에 허덕이는 떠분한 나날의 가정생활에서 몇개월 동안 훌훌히 벗어나고 싶은 충동도 이들의 출가를 자극하는 이유라 할 것이다.

어차피 이들은 교육수준이 얕은데다 아무리 생활력이 강하다손치더라도 역시 여자이기 때문, 특히 낯설은 이역으로 출가하는때는 남의 보호가 필요한 것이요 따라서 수탈 대상으로는 안성맞춤인 것이다.

제주도 해녀들은 거의 100여년전부터 경상남도에 출어하기 시작했고 점차 북상하여 경상북도도 옮겨가면서 한국의 각도 연안을 비롯, 일본·블라디보스톡(Vladivostok) 및 중국 연안에도 출어하기에 이르렀다. 그 출가 인원은 도합 4~5천명에 달하고 있었으니²⁴⁾ 늘 이들의 권익 문제가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게 마련이었다.

해방 이후, 이들의 출가는 경상북도로 집중하게 되었고 앞에 말한 재정지구를 중심으로 비재정지구 및 각도 연안을 도합하면 그 출가인원수는 본토에만 언제나 4~5천명 내외에 이르렀던 것이다.²⁵⁾

때마다 연초가 되면 본토에서 객주들이 출가해녀를 모집하러 제주도로 물려든다. 이들은 감언이설로써 해녀들의 신변이나 권익을 최대한으로 보장할 것을 다짐하고 전도금을 내 준다. 전

(24) 출가인원수에 대해서는 1930년대에는 4~5천명쯤 되었으리라 볼 수 있다. <朝鮮> 1933년(昭和 8년) 7월호 PP. 67~68에 보면 田口禎憲의 <濟州島の海女>라는 글 가운데 「…海女は全島の沿岸百二十三個里に在住する婦女子の職業で本島沿岸のみに限ら。古くから(凡五十餘年前)慶尚南道に出漁し,漸次多島海から慶尚北道・江原道・咸鏡道・黃海道に迄及び,遂に朝鮮各道の沿岸・内地(註, 日本)・露西亞・支那(註, 中國)等の沿海にも進出し, 其の數毎年五六千人, 漁獲高七十五萬圓以上に達している。」라는 기록이 있다. 또한 1939년 발행 <濟州島勢一覽>에는 제주도 해녀의 출가인원수가 4천인이상이라 했고 1937년 발행 <濟州島勢要覽>에서는 1934년도의 출가인원이 약 5천인 이상에 달한다고 했다.

(25)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제주도지부나 제주도 수산과의 통계에 따르면 본토 출가인원이 1962년도의 4,060명은 예외로 1962~1969년 사이에 언제나 1천5백명내지 2천여명으로 나타나 있으나 실제수는 항상 4~5천명에 달했었다. 왜냐하면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채 밀출가하는 해녀들의 수가 연년상당수에 이르기 때문이다.

도금을 받으면서부터 해녀들은 아주 이 객주들에게 얽매이게 된다.

예전에 풍선으로 출가할 때에는 객주가 선주를 겸했었으나 연락선편으로 출가하면서부터 출가지의 일정한 곳으로 연락처를 정하고 출륙한 다음 객주를 만나는 수도 많아졌다. 이 객주들은 당지의 광암주(廣岩主)들과 결탁하여 선량하기만 한 제주도 해녀들을 갖은 방법으로 수탈하는 수가 많았다.

당지에서의 어장매매 행위는 출가해녀들의 권익을 짓밟는데 가장 큰 두통거리다. 공동어장은 수산업법 제10조에서 엄연히 그 매매를 금하고 있다.²⁶⁾ 그런데도 불구하고 甲이라는 어협에서는 乙이라는 광암주(廣岩主)에게 상당한 행사료를 받고 팔아버린다. 그 이유는 甲어협내에 천초·은행초·앵초 등 값진 해조류가 상당량 깔렸는데 이를 캐어낼 해녀들이 당지에는 없기 때문이다. 광암주(廣岩主)는 그 어장내의 해조류를 은통 사들인 것이다. 이 해조류를 캐내기 위하여 광암주는 객주(인술자)를 제주도로 보내고 해녀들을 모집해 온다. 객주를 따라간 해녀들은 아주 고용당한 것이나 다름없이 해조류 근당 얼마씩의 요금을 받고 채취한다. 해녀들이 받는 요금은 그 당시의 시세로 보아 몇분의 1밖에 안되는 액수다.

더구나 출가해녀들은 입어행사료·어협 수수료·지도원 수당·위탁판매 수수료·제잡비라는 명목으로 이중삼중 뜯기고 나면 실수입은 말할 수 없는 금액이 돼 버린다. 곁들여 채취물을 저울질할 때 그 근량을 속여 실제 채취량의 몇분의 1을 비정적(非情的)으로 떼어 버리기도 한다.

1956년의 경상북도 구룡포·감포·양포 3개 어업협동조합 관내에서의 제주도 출가해녀 1,070명에 대한 관행입어의 재정은 우선 어장매매를 줄이게 하고 출가해녀의 권익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한 바 컸던 것이다.

그 내용을 간추려 보면 ① 양남·감포·양포·구룡포·대보 각어조(나중에 陽南은 감포어협에, 大浦는 구룡포 어협에 각각 흡수됨) 향유 공동어장 전역에 ② 나잠(裸潛)의 어업방법에 의하여 ③ 5월 1일부터 8월 말일까지 ④ 천초·은행초·앵초·패류 채취를 위해 ⑤ 1,070명이 입어할 수 있는 관행을 인정받게 된 것이다.

이의 재정은 수산업법 제69조²⁷⁾에 의거한 것이다. 공동어장의 매매는 수산업법 제10조 및 제19조²⁸⁾의 정신에 위배될 뿐더러 사실상 이곳에서 제주도 해녀가 계속 입어한 실적이 있다는 사

(26) 수산업법 제10조(공동어업의 면허) ① 공동어업은 일정한 지역내에 거주하는 어업자의 어업경영상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한하여 면허한다. ② 어업협동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의 조합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어업협동조합이 향유하는 공동어업권의 범위 안에서 각각 어업을 할 수 있다.

(27) 수산업법 제69조(어장구역등에 관한 재정) 어장의 구역, 어업의 범위, 보호구역, 어업의 방법 또는 입어의 관행에 관하여 분쟁이 있을 때에는 그 관계인은 수산청장에게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28) 수산업법 제19조(면허허가권 받은 자 이외의 자가 어업을 지배할 때의 어업의 취소)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 이외의 자가 사실상 당해 어업의 경영을 지배하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행정관청은 그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실을 근거로 한 것이다. 재정지구 안에서는 표면적으로는 출가해녀에 대한 권익이 전적으로 보장되는 듯 보였다. 그러나 실상은 달랐다. 자유당 말기의 혼란을 극한 사회상 밑에서 꺾암주(鑿岩主)들은 권력층의 비호 아래 어장의 암매를 일삼으면서 출가해녀들의 자유입어를 위협하는가 하면 객주(인술자)들은 연약한 해녀들을 인솔해다 놓고 갖은 명목으로 이들의 수입을 수탈해 갔다.

그 한 예를 1959년 6월 22일자 조선일보의 <프리즘>란에서 찾아보기로 하자.

피땀 흘려 남 좋은 일

—海女 集團 告訴事件—

(조선일보 1959, 6, 22)

사시사철 춥거나 덥거나 물속에서 살고 바다를 지장 삼아 살아나가는 가냘픈 여성들의 그 조그마한 수입을 등쳐먹는다고 억울함을 사직당국에 고소하는 동시에 각계에 탄원을 하는 등 마침내 참고 참아왔던 해녀들의 울분이 일부지역에서 표면화하였다.

경북 포항지방해무청 관내의 구룡포·양포·감포·대보등의 자어업조합을 상대로 동해안에 와 있는 해녀들이 대구지방검찰청에 고소를 제기하였다.

육지해안지대 해녀들의 작업 대상지는 대개가 다 어업조합 내지는 공동어장인데 이것을 공매입찰한 것이다.

그런데 제주도의 봄은 미역의 채취로써 한창 성황을 이룬다. 그후 노동력이 강한 중년층의 해녀들은 육지에서 오는 인솔자를 따라 해안지대로 작업을 하러 나온다. 인솔자는 해녀들이 집을 나간 사이의 자녀들의 교육비나 쌀값등의 생활비를 꾸어준다. 궁핍한 해녀들에게는 나중의 이자 생각보다 우선 급하니까 그 돈을 쓴다. 인솔자를 따라 육지 해안지대로 온 해녀들은 한푼의 돈이라도 아끼려고 집단 자취생활을 하며 작업을 하는데 종시 이 인솔자는 그림자처럼 따라다니 모든 일에 관여를 한다. 해녀들은 그저 믿고 온게 인솔자이고 또한 빚도 있으니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좋은 작업장을 알선할 터이니 술값을 거둬서 교제를 한다느니 저울을 잘 보아 주도록 교제를 한다느니 늘 성화같이 따라다니며 돈을 뜯어간다고, 물속에서 작업하는 이 해녀들의 하루 수입이란 그리 많은 것은 아니다. 그날그날의 생활을 간신히 하다 보면 집에 돌아갈 차비조차 없을 때가 많다. 장마가 지면 빗만 늘어나 답답한 나머지 물건(해산물) 캔 육식으로 물에 들어갔다가 목숨을 잃는 해녀도 있었다.

이와 같은 실정에서 현지 해녀들이 착취를 당한 실례를 고소장에서 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작년 11월경 금년도 공동어장 행사권을 공매입찰하게 됐었는데 구룡포어업조합은 1천

1백 36만여환, 대보어업조합은 5백 85만여환, 양포어업조합은 6백 52만환, 감포는 2백 75만환에 각각 팔아 먹었으며 은행초는 1백근당 1만 7천여환에 팔리는데 임금조로는 불과 6천환을 생산자에게 주고 나머지는 중간이득을 취하고 있으며 천초는 1백근에 1만 6천환에 팔리지만 생산자에게는 불과 6천 2백환을 지급하여 거의 3분의2를 불로취득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이밖에도 생산자에게 생산자들의 복리를 위한다는 어업조합에서는 생산자인 해녀들은 천대하고 특정상인과 조합 간부들의 배만 불리게 하는 일들이 한두가지가 아닌데 감포·양포·구룡포·대보등 4개 어업조합에서 천초와 은행초에서 얻는 연간 중간이득의 액수는 5천 6백여만환에 달한다는 것이다.

경북 재정지구의 어장 매매로 인한 제주도 출가해녀의 피해가 어느 정도였는가를 곧 짐작할 수 있는 기사 내용이다. 당시의 어업조합과 광암주들의 사욕으로 말미암아 제주도 출가해녀들은 응당 받아야 할 수입의 3분의1도 확보치 못하는 실정이다. 출가해녀들은 과연 얼마나 수탈당해 왔으며, 응당 받아야 할 수입에 비해 실수입의 비율은 얼마였는가? 이의 정확한 계수는 중간 착취자들 자신이 아니면 분명히 알 수 없다. 수탈당하는 줄은 뻔히 알면서도 연약한 여자들인지라 본인들 자신도 착취당하는 비율을 굳이 따지려 들지 않는 게 일반이기 때문이다.

1961년 3월 10일 제주도 어련 이사장 및 산하 각 어업조합 이사 명의로 낸 비라문「경북 출가잠수 및 어민작위께 알리는 말씀」에 보면, 그 내용은 암인술자를 따라 밀출가하지 말라는 것인데 만약 밀출가할 경우에는 총수입중 8할이란 숫자가 해녀들의 이익에서 수탈당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제수수료 및 각종 세금에서 약 5할이 감해지는데 ① 입어행사료 23.5% ② 위판수수료 6% ③ 어업세 2% ④ 동부가세 2% ⑤ 원천과세(교육세) 0.9% ⑥ 포장, 인부, 운반 및 검사료 5% ⑦ 인술자 수수료 10% 계(計) 49.4%에 이르며 현물근검계량(現物斤檢計量)을 지선(地先) 지방민들이 몇대로 집행하는데서 약 30%가 지방부락민의 소득으로 수탈되기 때문 총수입의 약 80%를 착취당하고 있다고 결론짓고 있다.

그 수탈의 정도를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양심적인 인술자가 없는 바도 아니다. 그러나 대체로 본토로 나가는 출가해녀들은 이력저력 수탈당하게 마련이다.

또한 신문기사(제주신문 1961. 5. 19 『漁場不法賣買恣行』 題下)에 따르면, 출가증을 갖지 않은 밀출가자들이 많음은 그들의 부정을 부채질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출가해녀들의 권익을 해녀들 스스로가 짓밟는 사례인 것이다. 또한 재정지구의 모 어업조합의 이사는 어장 매매의 모순을 시인하면서도 지방민의 의사를 전혀 무시할 수 없으니 불가항력이 아니냐는 어처구니없는 발언을 하고 있음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물지각한 그곳 어업협동조합 및 어촌계와 광암주(鑿岩主)의 횡포는 해마다 제주도의 해녀들로 하여금 사년초가의 경지에 몰아넣기가 일쑤였다. 심지어는 생산물 판매액의 1할만 해

녀 들에게 돌려 주고 나머지는 은봉 착취하려는 획책도 보인다. (제주신문 1963. 5. 19 『慶北 出稼 陳痛 겪는 公營制』 題下의 기사)

그리고 경북측에서는 출가해 오는 제주도 해녀들을 은근히 축출하고 싶어 버려져 왔었는데 드디어 1967년 2월, 감포·양포·구룡포 3개 어업조합장 명의로 「입어관행권 소멸확인 소송」(入漁慣行權 消滅確認 訴訟)을 대구지방법원에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개개인의 입어가 계속되어야 입어관행권이 유지되는 것이지 입어의 중단 또는 관행자가 사망하였을 때는 동입어관행은 소멸하는 것이고 동권리는 양도·매매 또는 상속되지 않는 것인데, 피고등은 입어관행에 대한 재정을 받은 수년후인 서기 1959년 이후 현재까지 원고등 공동어장에 입어한 사실이 전혀 없기 때문 입어관행권은 당연히 소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⁹⁾

1968년 9월 4일, 대구지방법원 제6민사부에서는 제주도측의 패소로 판결이 내려졌고 즉각 피고측에서는 항소를 제기하여 지금 제류중에 있다.

입어관행권 소송이 대구지법에 제소된 사이에도 제주도 해녀의 출가는 여전하였지만 그 구박은 더욱 심해졌고 따라서 출가 인원수도 점점 줄어갔다.

그것은 소송이 제기되었던 1967년 제주어협 흥석종씨의 출장 복명서에 나타난 바 지선측의 제주도 해녀 배치실태를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음을 보았어도 이를 곧 짐작할 수 있다.

가) 해마다 어장을 매매하여 특정인으로 하여금, 어장을 관리케 함으로써 수초요금제(水草料金制)를 강요하고 있음.

나) 제주도에서 발급한 출가증을 인정치 않으며 입어증도 발급치 않음으로써 생산실적을 없애고 있음.

다) 지도원을 선정치 않음으로써 출가해녀들의 조직력을 약화시키고 지선측 요구에 명종토록 하고 있음.

라) 잠수기선의 제1종 공동어장⁸⁰⁾에서 남획하는 것을 방관함으로써 해녀들의 주채취물

(29) 1967년 5월말 필자가 출가해녀를 조사하며 그곳에 출장했을 때, 확인한 바에 의하면, 솟장에 제시된 이유 외에도 내장된 몇가지 이유가 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간추려 말하자면 첫째 제주도 해녀의 권익 보장을 소홀히 한다는가 하는 비난이 되풀이되니 시끄럽다는 점. 둘째 이해가 상반된 당자 어촌계와 출가해녀와의 갈등을 조정하기가 힘들다는 점. 셋째 그곳 어협관내에도 해녀수가 이제는 상당히 불어났으므로 제주도 해녀는 불필요하게 되었다는 점. 넷째 지도원 개개인의 잘못은 곧 그곳 어협의 잘못으로 간주되니 아니꼽다는 점. 다섯째 해조류·패류의 양식과 개탁기에 막대한 노력과 예산을 들여두면 채취기에는 왈카 돌려들어 채취해 가는 제주해녀의 경우는 「불로소득」이라 할 수 있으며 부당하게 여겨진다는 점등이었다.

(30) 수산업법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르면 <제1종 공동어장>이란 嚴干潮時 水深 10미터 이내(해조역인망 어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15미터이내)의 水面을 말하는데, 다만 海底의 高低로 그 수심의 한계에 외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수심을 가진 水面의 넓이의 3분의 1에 상당하는 수면까지 초과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인 천초·은행초·패류를 고갈상태로 만들고 있음.

마) 전도금을 특정인 괄암주(鰲岩主)에게 방출하여 전도금으로 수초요금을 지불토록 하고 출가해녀의 생활에 위협을 주고 있을 뿐더러 전도금은 특정인의 사업자금화되고 있음.

바) 출가해녀의 개인별 생산월보를 작성치 않음으로써 조합에 청산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없애고 있음.

사) 부정검군을 자행하고 있으나 이를 시정치 않고 오히려 방관 또는 동조하고 있음.

아) 수초요금의 시세와 격차가 심하여 이의 시정이나 부당성을 지적하여도 속수무책일 뿐더러 대금 지불이 적기에 되지 않더라도 이를 문책, 또는 대책을 세우지 않고 방관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 재정지구 구룡포·양포·감포 어협의 처사임.

6

한국의 자연안에 걸쳐 나잡어장이 있는 곳이면 거의 제주도 해녀가 아니 이르는 곳이 없다. 또한 제주도 해녀가 이르는 곳마다 가혹한 수탈은 뒤따르게 마련이다.

갓가지 모습으로 강구한 세월을 되풀이되어온 수탈의 실상을 은봉 기록해 놓는다면 그것은 산더미 같은 문서가 되어질 것이다.

경북 재정지구의 경우는 그러니까 그 일부분에 불과하다. 그래도 경북 재정지구에서는 입어판행권이 재정되어 있어서 해녀의 권익이 얼마큼 보장되었던 건 사실이요, 더 지긋지긋한 인권침해와 수탈이 그 외의 해안에서 악랄하게 이루어져 왔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공공연히 어장이 팔려나가고 괄암주(鰲岩主)들의 행패가 무수히 되풀이되는가 하면 인술자들의 비인도적 횡포가 결들여짐으로써 해녀들은 무참히 이들의 희생물이 된다. 심지어는 물매를 맞고 박해당하는가 하면 자유로 귀향할 수도 없게 감금당하는 사례까지 벌어지는 예가 많다.

그 한 예로 부산 남천동에 정착해 있는 제주도 해녀의 수탈상을 말해 주는 기사를 다음에 소개한다.

빼앗긴 30년 삶의 터전

—釜山 南川洞 定着潛嫂 60명 눈물의 呼訴—

(제남신문 1968. 3. 11)

잠수들의 입어기를 앞두고 요즘 바다를 의지하여 생계를 유지해 온 부산 남천동의 80여 본도 출신 잠수들은 현지 어협의 부당한 한장매매로 말미암아 20여년간을 이어온 삶의 바탕을 유전당한 채, 권익을 되찾기 위한 투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당국의 적절한 대응책이 시급히 내려지고 있다.

잠수권익옹호회(부산 소재)에서 알려진 이와 같은 소식은 잠수들에 대한 지선민들의 이

러한 착취행위가 남천동에만 그치지 않고 재정지구인 감포·양포·구룡포를 비롯한 경남·북 및 강원도 일대에 정착, 또는 출강할 잠수들에게까지 이와 유사한 착취행위가 유발될 것으로 간주되고 있어 하나의 사회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짙다.

남천동 해안에 정착해 있던 60여 잠수들은 지금까지 독점해 온 그들의 공동어장을 어촌계도 모르는 사이에 현지어협에 의해 김모(金某)란 사람에게 팔려진 사실을 미역 채취기를 앞둔 지난 2월초에 확인하여 이를 되찾기 위한 투쟁을 벌였으나 5할제를 주장하는 지선단과의 사이에 여러 차례의 충돌만 빚은 끝에 임신중인 이도화여인(43. 구좌면 김녕리)이 유산을 당하는 등의 피해만 입었을 뿐, 아무런 성과도 찾지 못하는 실정에서 본도의 지원만을 목마르게 호소하고 있다 한다.

이와 같은 참상에 부딪치자 잠수들은 부산지검에 피해사실을 고발하고 잠수권익옹호회도 대대적인 투쟁을 벌이기로 하여 수산업법에 보장되어 있는 입어행사의 규정 및 어장매매금지조항을 내세워 법정투쟁을 전개하기로 규합하고 있다 한다.

특정인에게 어장을 빼앗긴 잠수들은 채취된 미역까지도 갈취당하는 등의 말못할 설움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도내에 있어서의 해녀들의 수익 침해는 19세기말부터 늘 말썽이 되어 왔지만 우선 잠수기 어선의 불법 침해다. 잠수기어선의 제1종 공동어장어의 침해는 해마다 영세해녀들의 채취물을 온통 쓸어가 버림으로써 해녀들로 하여금 생업에 위협을 받게까지 이르게 된다.

잠수기어선의 불법 침해로 해서 말썽을 안 일으키는 해가 없으며 말썽을 빚지 않는 어장이 없을 정도다. 관계 당국에서도 늘 대책을 세우면서 이를 제지하고 있지만 어찌어찌 그 근절은 여의치 않은 듯, 해마다 영세어민들의 피만 말려 오는 터이다. 주민들 역시 이들을 쫓기 위하여 갖은 수단을 다하는데 그것은 이 잠수기선의 침범이 언제나 철천지 원한이기 때문이다. 가다가는 실력으로써 이들과 대항하여 유혈소동을 빚는 수도 있다.

〔전략〕 지난 7일, 수산업법에 의해 설정된 나잠어장인 제1종 공동어장 안에서 불법 취업중인 4~5척의 잠수기선을 발견한 이곳 주민들이 4척의 어선을 풀어 추격한 끝에 그 중 〈길성호〉(5톤, 제주시 김두옥씨 소유)를 나포, 섬으로 예인, 마구 선체를 뒤엎어 버린 일이 있었던 바로 이틀후인 2월 9일 다시금 어장을 침범한 1척의 잠수기선을 잡아다가 풀으로 끌어올린 이곳 주민들은 마치 폭동을 방불케 하는 무서운 폭력을 빚어냄으로써 그들의 오랜 울분을 행동으로 표현하고 만 것이다. 이날 아침 9시 30분경 가파도 서남방 속칭 「간바리여」 동쪽 공동어장(가파리민들이 주장) 안에서 정선 취업중인 잠수기어선을 목격한 이곳 주민들은 〈동양호〉(8톤, 가파리 도항선)·〈해운호〉(6톤)·〈등해호〉(6톤) 3척의 어선을 긴급 출동, 문계의 잠수기선 〈재영호〉(4톤, 하모리 이연보씨 소유)를 포위, 강제 예인하여

왔는데 <재영호> 선원들끼 밝힌 말에 의하면 포위 당시 <동양호>에 타고 있던 나모(羅某)씨(가파리)는 미리 신고간 돌맹이로 <재영호>를 향해 마구 돌팔매질을 했으며 <재영호>의 키를 잡고 있던 羅斗五씨(34. 선장)가 머리를 맞고 기절, 키를 놓아 선체가 빙빙 도는 순간 추격해온 어선 1척이 <재영호>를 들이받으며 접선.....잠수기선에 뛰어들어 나모씨(가파리)는 쓰러져 있는 선장을 일으켜선 다시금 돌맹이로 내리치면서 「배를 가파도로 끌어가자」고 외치더라는 것.

현지로 예인되어 이곳 주민들에 의해 물으로 끌어 올려간 <재영호>는 「죽여라. 때려 부수어라」는 흥분된 함성을 지르는 도끼·곡괭이·망치·지렛대·돌맹이등을 손에 든 2백여 주민들에 의해 선체는 물론 수십종의 잠수기구와 선내 비품들을[다치는 대로 파괴, 쇠가 2백만원 상당(선주측 계산)의 피해를 입히는 난동을 부렸는가 하면 「나를 죽이더라도 기계만은 살려 달라」면서 원동기(12마력)를 감싸안은 <재영호> 기관장 최덕윤씨(51. 하모리)에게 도끼를 휘둘러 왼쪽 어깨와 팔에 전치 2주를 요하는 상처를 입혔으며 동잠수기선의 선원 양춘수(31. 잠수부)·나두오(34. 선장)·이상남(26. 선원)·고영식씨(22. 취사수)등에 돌매질을 하는 한편 부수다 남은 잠수기선을 뒤집어 놓고는 배밑창을 도끼로 마구 찍어 바람구멍을 내는 등의 참극을 빚어내고 밀었는데.....(후략)](제남신문 1968. 2. 19)

이 기사만 보더라도 잠수기선의 불법침해에 대한 평소에 지니고 있는 주민들의 울화가 어느 정도인가를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이 잠수기어선의 불법적 어로 외에도 도내에서 역시 해녀들을 수탈하는 조건은 많다. 어장 매매가 암암리에 이루어져서 본토에서의 경우처럼 전주(錢主) 곧 관암주(官岩主)의 부당이득을 위해 해녀들의 값진 희생과 출혈을 치르지 않으면 안되는 사례가 가끔 일어난다. 그리고 물론 해녀들 스스로도 작성해야 하겠지만, 마을과 마을 사이에 크든 작든 언거꾸 일어나는 어장 분규는 해녀들의 생업안정과 정력 남용등 상당한 손실을 가져다 주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 해녀의 수익침해에 대해 주마간산격(走馬看山格)으로 살펴 왔다. <열두놈 혼착 먹어 사 줘수지지 온다>(지역하면 12인 한쪽 먹어야 잠수 차지 온다, 곧 12인 이상에게나 즐기고 갔어야 해녀들 몫이 남는다는 뜻)는 속담도 있듯이 이 문제는 광활하고 심각한 바 있다.

지면관계등으로 다루어져야 할 많은 내용을 남기고 보니 한편 결연적어지는데 후일 기회를 보아 보완할까 한다.